

## 04 노인학대를 발견하면?

## Lesson 1. 노인학대 신고 방법

-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.
-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 1577-1389,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, 내방·가정방문·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접수, 서신 등의 경로로 신고가 가능함.
- ③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과 112, 119에도 노인학대 신고도 가능함
- ④ 노인돌봄서비스생활관리사, 노인일자리사업,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신고도 가능함

## Lesson 2.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

- 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를 가진 직종의 사람들을 말함
- ② 노인복지시설 종사자, 장애인복지시설(장애노인)관련 종사자, 가정폭력관련종사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사회복지관·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, 구급대의 대원,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,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, 의료인, 의료기사, 응급구조사,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,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보호자시설 종사자 등의 직군이 포함됨

## 04 노인학대를 발견하면?

## Lesson 3.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학대사례 개입과정

- ① 신고접수
- ② 사례 접수 후 사례 스크리닝
- ③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
- ④ 사례판정
- ⑤ 개입 및 서비스 제공
- ⑥ 개입 및 서비스 제공
- ⑦ 종결
- ⑧ 사후관리

## Lesson 4.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서비스

-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
  - 상담 서비스
  - 사회복지 서비스
  - 법률 서비스
  - 의료 서비스
  - 보호 서비스
  - 정보제공 서비스 등